

대전관광공사 MICE 지원제도 * 기타회의의 경우, 기관 홈페이지 참고

구분		국제회의		
지원대상	신청주체	○ 대전으로 국제회의를 유치, 개최하는 단체, 학회, 협회, 기관 또는 법인		
	기준	<p>○ 국제협회연합(UIA) 기준 국제회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UIA Yearbook에 나열된 하나 이상의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든 회의 - 또는 아직 연감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등재될 자격이 있는 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(※ UIA 등록/가입 국제기구 출처 혹은 이에 준하는 국제회의만 인정) <p>○ 국제컨벤션협회(ICCА) 기준 국제회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개국을 순환하며 국제 협회 학회가 주최하는 참가자수 50명 이상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<p>○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제기구, 기관 또는 법인·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3개국 이상의 외국인 참가, 전체참가자 100명 이상(외국인 50명 이상),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(※ 국내 개최 전국 단위 학술대회는 국내회의로 적용) <p>※ 개최형태 기준: 오프라인, 하이브리드 ※ 참가자 인원수 기준: 오프라인참가자 100%, 하이브리드 행사의 경우 오프라인 참가자만 인정 ※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행사의 중요도, 성격 등 지원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지원 가능</p>		
지원제도	단계별	유치지원	홍보지원	개최지원
	지원규모 (한도)	최대 3천만 원	최대 2천만 원	최대 2억 원
	지원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치제안서, PT, 홍보물, 기념품 제작 지원 - 유치 지지서한 / 메시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전광역시장, 대전관광공사 사장 - 관계자 사전방한(대전답사), 유치결정 회의 or 이에 준하는 회의 항공, 참가경비(2인 이하), 숙박 차량, 관광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인 이하, 이코노미석, 스탠다드룸(※ 항공좌석은 협의 가능) - 신청기관 주최 공식 오·만찬비 및 공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유치단 개별 식사비용 지원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홍보물, 기념품 제작 - 신청기관 주최 해외 공식 오·만찬비 및 공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홍보단 개별 식사비용 지원불가 - 전차대회(또는 유관회의) 홍보부스 설치·운영비 - 전차대회(또는 유관회의) 참가경비 1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1회에 한함, 공사규정에 따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홍보물, 기념품 제작(대전지역 업체 이용에 한함) - 행사장 임차료(컨벤션센터, 호텔 등) - 공식 연회비 및 공연(환영리셉션, 갈라디너 등) - 참가자 숙박(※ 포상관광 제외) - 대전 및 충청지역 관광지 입장료 및 관광프로그램 - 셔틀버스 차량 임차료(대전지역 업체 이용에 한함)
	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전·충청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최소 1개사 활용 필수 - 행사 관련 제작물(홍보물, 기념품, 인쇄물 등)과 홈페이지에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관광공사 후원 명칭 및 로고 노출, 행사장 내 홍보영상 상영 - 대전관광공사 및 대전광역시 홍보 기회 제공, 설문조사[서식 7] 등에 협조 -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필수 서류 제출 - 타 기관,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,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- 결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, 계획대비 행사 개최 결과 또는 유치 홍보활동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또는 축소 가능 - 참가자 명단 허위 및 중복 제출, 지출증빙서류의 위조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·환수 및 향후 지원 시 불이익 조치 - 대전광역시 유치·홍보·개최를 위한 지원금 수령 후, 개최도시를 변경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5년 동안 유치 및 개최지원 신청 불가 		
신청방법	신청시기	○ 연중 접수(수시신청) (※ 최소 행사개최 1개월 전) / 예산소진시 마감		
	지원절차	○ 지원신청 > 내부심사 >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안내 > 행사개최 > 결과보고서 제출 > 결과평가 > 지원금 지급		
	신청방법	○ “공문”으로 신청서 제출		
문의처	○ 대전관광공사 MICE뷰로팀 김도영 대리 [전화 : 042-250-1325 / 이메일 : dykim@djto.kr]			